

**알기 쉬운  
시험·검사 민원 절차 안내서**

**2025. 3.**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점검표

명칭

알기 쉬운 시험·검사의뢰 절차 안내서

아래에 해당하는 사항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등록대상 여부</b>	<input type="checkbox"/> 이미 등록된 지침서·안내서 중 동일·유사한 내용의 지침서·안내서가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기존의 지침서·안내서의 개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지침서·안내서의 제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아래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 : _____ )	
	<input type="checkbox"/>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또는 행정규칙(고시·훈령·예규)의 내용을 단순 편집 또는 나열한 것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단순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공고의 내용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일회성 지시·명령에 해당하는 내용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외국 규정을 단순 번역하거나 설명하는 내용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신규 직원 교육을 위해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 상기 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예'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침서·안내서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적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b>지침서·안내서 구분</b>	<input type="checkbox"/>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행정사무의 세부 기준이나 절차를 제시하는 것입니까? (공무원용)	<input type="checkbox"/> 예(☞ <b>지침서</b>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령 또는 행정규칙을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특정 민원업무에 대한 행정기관의 대외적인 입장을 기술하는 것입니까? (민원인용)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b>안내서</b> )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b>기타 확인 사항</b>	<input type="checkbox"/> 상위 법령을 일탈하여 새로운 규제를 신설·강화하거나 민원인을 구속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 상기 질문에 '예'라고 답하신 경우 상위법령 일탈 내용을 삭제하시고 지침서·안내서 제·개정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p>상기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였음.</p> <p style="font-size: 1.2em;">2025 년    3 월    14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20px;"> <div style="text-align: center;"> <p>담당자</p> <p>확 인(부서장)</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김 은 정</p> <p>이 광 수</p> </div> </div>		

이 안내서는 업체나 개인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식약청) 시험분석센터에 시험·검사의뢰를 희망하는 사례가 있어, 업무 진행 절차를 Q & A 형식으로 안내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필요한 관련 규정 및 서식 등을 발췌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고자 기술한 것입니다.

본 안내서는 대외적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본문의 기술방식(‘~하여야 한다’ 등)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준수하셔야 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 안내서는 2025년 3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민원인 안내서”란 대내외적으로 법령 또는 고시·훈령·예규 등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거나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하는 것(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서등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 본 안내서에 대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51-602-6311

팩스번호: 051-602-6339

# 목 차

## I . 개요

## II . 시험 · 검사의뢰 전 확인 사항

1. 사적 목적으로 직접 부산식약청에 시험 · 검사의뢰 가능한가?
2. 시험 · 검사의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3. 부산식약청에서 시험 · 검사 가능 제품 범위는?

## III . 시험 · 검사의뢰 및 접수 절차

1. 시험 · 검사의뢰시 작성해야 할 서류는?
2. 시험 · 검사의뢰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3. 시험 · 검사의뢰서 접수 후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나?
3. 시험 · 검사 수수료 및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
4. 시험 · 검사완료 후 잔여검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나?

## IV . 시험 · 검사 진행 및 성적서 발급 절차

1. 시험 · 검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2. 시험 · 검사 진행상황은 확인 가능한가?
3. 시험 · 검사성적서 발급은 어떤 형식으로 되나?

## V . 관련 규정 및 서식

# I

## 개요

이 안내서는 수출 혹은 자사 제품의 품질관리 등 사적 목적으로 부산 식약청에 검사를 의뢰하고자 문의하는 사례가 있어, 외부 검사의뢰 절차를 'Q & A 형식'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이해를 돕고, 관련 규정 및 서식을 한곳에 모아 찾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 II

## 시험·검사의뢰 전 확인 사항

### ① 사적 목적으로 직접 부산식약청에 시험·검사 의뢰 가능한가?

☞ 부산식약청은 수입식품 등 최초 정밀검사 및 무작위검사, 위해 정보 및 1399 신고 등에 따른 유통 식의약품 수거 검사를 수행하고 있어, 사적 목적으로 개인이 직접 의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시험·검사하고자 하는 항목을 관할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및 동물위생시험소 등 시험·검사기관에 1차적으로 의뢰하였으나, 해당 시험·검사기관에서 시험·검사가 불가능 한 경우 부산식약청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 ② 시험·검사의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의뢰인의 관할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혹은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참고해주세요】

#### ※ 지역별 보건환경연구원 연락처

지역	검사기관	연락처	지역	검사기관	연락처
서울/경기	서울보건환경연구원	02-570-3114	영남	부산보건환경연구원	051-309-2730
	인천보건환경연구원	032-440-5423~6		울산보건환경연구원	052-120/052-229-6199
	경기보건환경연구원	031-8008-9600		대구보건환경연구원	053-120
충청	대전보건환경연구원	042-270-6800		경북보건환경연구원	054-339-8117, 8226, 8105
	세종보건환경연구원	044-120	경남보건환경연구원	055-254-2216~7	
	충북보건환경연구원	043-220-5901~4	광주보건환경연구원	062-120	
	충남보건환경연구원	041-635-6800	전북보건환경연구원	061-290-5200	
강원	강원보건환경연구원	033-248-6400	전라	전남보건환경연구원	061-240-5111
				제주	제주보건환경연구원

#### ※ 지역별 동물위생시험소 연락처

지역	검사기관	연락처	지역	검사기관	연락처
서울/경기	서울보건환경연구원	02-570-3114	영남	부산보건환경연구원	051-309-2730
	인천보건환경연구원	032-440-5423~6		울산보건환경연구원	052-229-5241
	경기동물위생시험소	031-8008-6300		대구보건환경연구원	053-760-1301
충청	대전보건환경연구원	042-270-6800		경북동물위생시험소	053-326-0011
	세종동물위생시험소	044-120	경남동물위생시험소	055-254-3011	
	충북동물위생시험소	032-220-6231	전북동물위생시험소	063-290-5400	
	충남동물위생시험소	041-635-7021	전남동물위생시험소	061-286-6131, 6114	
강원	강원동물위생시험소	033-254-2011	제주	제주동물위생시험소	064-710-8523

### ③ 부산식약청에서 시험·검사 가능 제품 범위는?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3조에 명시된 사항에 부합하는 경우 시험·검사의뢰가 가능합니다. 다만, 부산식약청에서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시험·검사는 불가합니다. 또한, 시험·검사의뢰 가능 제품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부산식약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장비로 시험·검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참고해주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3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및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약외품(醫藥外品),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체세포등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한 시험·검사
2.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에 관한 시험·검사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한외마약(限外麻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시험·검사
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기능성 성분 및 원료를 포함한다)에 관한 시험·검사
5.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른 세척제, 행금보조제, 위생물수건, 그 밖의 위생용품에 대한 시험·검사
6.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에 관한 시험·검사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시험·검사 대상물에 관한 시험·검사

※ 부산식약청 시험분석센터 대표전화인 051-602-6300으로 전화하시면, 의뢰하시고자 하는 제품 및 항목에 대하여 시험·검사 가능 여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험·검사의뢰 및 접수 절차

### ① 시험·검사의뢰시 작성해야 할 서류는?

-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별지 제1호 시험·검사의뢰서(붙임 1)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② 시험·검사의뢰 절차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 부산식약청 운영지원과 대표번호(051-602-6100)로 전화하시어 시험·검사의뢰 접수담당자와 일정을 조율하신 후 시험·검사의뢰서, 시험·검사대상물 및 시험·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부산 식약청 6층 민원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③ 시험·검사의뢰서 접수 후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

- ☞ 부산식약청 운영지원과 시험·검사의뢰 접수담당자는 「시험·검사의뢰 세부 규정」 제7조(시험·검사대상물 접수) 및 제8조(시험·검사 대상물 송부)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험·검사부서로 접수된 시험·검사 대상물 및 관련 서류를 송부합니다.

이후 분석 담당부서 장은 대상물의 상태, 시험·검사 가능여부 등을 판단하고, 시험·검사 담당자를 지정합니다. 지정된 시험·검사담당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별표1 시험·검사 수수료(붙임 2)에 따라, 수수료 산정하여 부산식약청 운영지원과에 통보합니다.

#### ④ 시험·검사 수수료 및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되나?

☞ 부산식약청 운영지원과 시험·검사의뢰 접수담당자는 시험·검사 담당자로부터 통보받은 산정된 수수료와 납입방법을 납입고지서 혹은 안내 공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수령한 안내문에 따라 지정 계좌(국고)로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⑤ 시험·검사완료 후 잔여검체를 되돌려 받을 수 있나?

☞ 시험·검사 완료 후 필요시 잔여검체 반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시험·검사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검사대상물일 경우만 반환 가능하며, 시험·검사의뢰시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잔여검체 반환 신청서(붙임3)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반환된 잔여검체는 신청한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가능하며, 소유권자 책임 하에 「식품위생법」 제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참고해주세요】** 반환하지 아니한 시험·검사대상물은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 IV 시험 · 검사 진행 및 성적서 발급 절차

### ① 시험 · 검사는 언제부터 시작되나?

☞ 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통합 실험관리시스템(LIMS)'에 등록되고 이때부터 검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참고해주세요】** 통합실험관리시스템(LIMS)에는 의뢰정보, 품목, 시험항목, 수수료 정보 등이 입력되며, 시험·검사일지, 시험·검사장비 출력물 등 시험·검사 관계 문서를 전산으로 3년간 보관·관리하게 됩니다.

### ② 시험 · 검사 진행상황은 확인 가능한가?

☞ 통합실험관리시스템(LIMS)에 등록된 이후부터는 부산식약청 시험 분석센터 대표번호 051-602-6300으로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시험·검사 진행상황에 대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제품별 시험·검사 처리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처리기간
의약품 등 검정(생물학제제를 제외한 단일제제)	30일
의약품 등 검정(생물학제제를 제외한 2개 성분 이상 제제 및 원료의약품)	55일
의약품 등 검정(수출용 혈장분획제제에 한함)	35일
수입생약제제검정	
- 단일성분제제 중 동물시험을 필요로 하는	55일
· 함량시험 및 아니필락시스	40일
· 항원시험	
수출인삼제제검정	25일
재조합의약품검정	62일
HIV항체검사	7일
B형간염(항체)검사 및 C형항체검사	10일
식품검사	25일
식품첨가물검사	25일
기구·용기 및 포장시험	20일
식품 중 미생물검사	
- 일반미생물검사(항목당)	10일
- 혐기성균 및 식중독균 검사	35일
식품비타민검사	35일
식품 중 방사능오염검사	20일

### ③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은 어떤 형식으로 되나?

☞ 시험·검사담당자는 시험·검사가 종료되면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 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시험·검사성적서(붙임 4)를 작성하여, 이를 부산식약청 운영지원과에 공문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이후 부산식약청 운영지원과 시험·검사의뢰 접수담당자는 의뢰인에게 최종 시험·검사성적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 ① 시험·검사 의뢰와 관련 되는 규정은 뭐가 있나?

☞ 시험·검사의뢰시 관련 법령 및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법령/규칙명	법령/규칙 종류
의뢰 절차 등 전반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총리령
	시험·검사의뢰 규칙 세부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잔여검체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수수료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 ② 시험·검사 의뢰, 시험·검사 대상물반환, 시험·검사성적서 관련 서식은?

☞ 관련 서식은 아래와 같으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http://www.law.go.kr))에서 관련 규정 검색 후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시험·검사의뢰서

[붙임 2] 시험·검사 수수료

[붙임 3] 잔여검체 반환 신청서

[붙임 4] 시험·검사성적서

# [붙임 1] 시험·검사의뢰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 의뢰규칙 [별지 제1호서식]

## ( ) 시험·검사의뢰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뒤쪽 참조
의뢰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번호: )	
제조사	④ 성 명		
	⑤ 주 소		
의뢰내용	⑥ 제조지 또는 산지		
	⑦ 시험·검사 대상물명		
	⑧ 시험·검사 항목		
	⑨ 의뢰목적		
	⑩ 제조법 및 참고사항		
	⑪ 시험·검사성적서 필요부수	부	( )외국어번역문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시험·검사를 의뢰함과 동시에 시험·검사성적서 및 외국어번역문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귀하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첨부자료	뒤쪽 참조	수수료 별도 고시 참조
------	-------	-----------------

### 유의사항

1. 의뢰인 및 제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①·④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적습니다.
2. 외국어번역문을 신청할 경우에는 ⑪란의 ( )안에 해당 외국어명을 표기하고, ①·③란의 성명·주소를 해당 외국어로 명확하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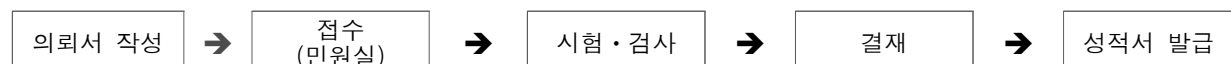
## 시험·검사 의뢰 첨부자료

1. 의약품 등 검정(생물학제제를 제외한 단일제제): 통관예정보고서(수입의 경우) 1부, 시험·검사 대상물
2. 의약품 등 검정(생물학제제를 제외한 2개 성분 이상 제제 및 원료의약품): 통관예정보고서(수입의 경우) 1부, 시험·검사 대상물
3. 의약품 등 검정(수출용 혈장분획제제): 자체 시험·검사 결과서, 시험·검사 대상물(시료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
4. 수입생약제제검정(단일성분제제 중 동물시험을 필요로 하는 함량시험 및 아니필락시스, 항원시험): 통관예정보고서(수입의 경우) 1부, 시험·검사 대상물
5. 수출인삼제제검정: 시험·검사 대상물
6. 재조합의약품검정: 기준 및 시험·검사방법 심사결과서 1부, 시험·검사 대상물, 그 밖에 시험·검사에 필요한 자료 1부
7. HIV항체검사: 시험·검사 대상물
8. B형간염(항체)검사 및 C형 항체검사: 시험·검사 대상물
9. 식품검사: 시험·검사 대상물
10. 식품첨가물검사: 시험·검사 대상물
11. 기구·용기 및 포장시험: 시험·검사 대상물
12. 식품 중 미생물검사[일반미생물검사(항목당), 혐기성균 및 식중독균 검사]: 시험·검사 대상물
13. 식품비타민검사: 시험·검사 대상물
14. 식품 중 방사능오염검사: 시험·검사 대상물

## 처리기간

의약품 등 검정(생물학제제를 제외한 단일제제)	30일
의약품 등 검정(생물학제제를 제외한 2개 성분 이상 제제 및 원료의약품)	55일
의약품 등 검정(수출용 혈장분획제제에 한함)	35일
수입생약제제검정 - 단일성분제제 중 동물시험을 필요로 하는 · 함량시험 및 아니필락시스 · 항원시험	55일 40일
수출인삼제제검정	25일
재조합의약품검정	62일
HIV항체검사	7일
B형간염(항체)검사 및 C형항체검사	10일
식품검사	25일
식품첨가물검사	25일
기구·용기 및 포장시험	20일
식품 중 미생물검사 - 일반미생물검사(항목당) - 혐기성균 및 식중독균 검사	10일 35일
식품비타민검사	35일
식품 중 방사능오염검사	20일

## 처리 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약품 등 시험·검사담당부서)

## [붙임 2] 시험·검사 수수료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 [별표 1]

### 시험·검사 수수료 (제2조 관련)

#### 1. 미생물학적 및 바이러스학적 시험·검사(공통)

구 분	수수료(원)
1) 미생물학적 검사	
(1) 대장균군, 일반세균수, 유산균수, 대장균, 진균수(1항목당)	19,900
(2) 대장균군, 일반세균수, 대장균(n=5)(1항목당)	43,600
(3) 식중독균 검사	
①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1항목당)	29,000
②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장염비브리오, 황색포도상구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n=5)(1항목당)	64,900
③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n=5)	47,700
④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n=5)(1항목당)	40,200
⑤ 캄필로박터 제주니/콜리(n=5)	46,500
⑥ 크로노박터(n=5)	38,300
⑦ 바실러스 세레우스(정량검사)	52,800
⑧ 바실러스 세레우스(정량검사, n=5)	225,700
⑨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황색포도상구균, 장염비브리오(정량검사)(1항목당)	36,100
⑩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정량검사, n=5)	143,900
⑪ 황색포도상구균(정량검사, n=5)	65,000
(4) 세균발육 시험	27,000
2) 바이러스학적 검사	
(1) B형간염 에스항원(HBs Ag)검사(EIA)	47,000

구 분	수수료(원)
(2) B형간염 에스항원(HBs Ag)검사(RIA)	53,300
(3)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항체검사(EIA)	68,000
(4) C형간염항체(Anti-HCV) 검사(EIA)	54,700
(5) 항바이러스활성시험(항 HIV 활성시험)	110,800
(6) 노로바이러스	317,600

## 2. 소독 약품의 시험·검사

구 분	수수료(원)
1) 살충제 감수성시험	58,700
2) 살충제 실내효력시험	52,200
3) 살충제 잔류효과시험	61,300
4) 야외효력 평가시험	64,600

## 3. 의약품의 시험·검사

구 분	수수료(원)
1) 약전시험(공정서 및 고시 포함)	약전(공정서 및 고시)에 수록되어 있는 시험항목별로 산정함
2) 수출용 제제	해당 시험항목에 준하여 산정
(1) 수출인삼제제 검정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 2
(2) 수출용혈장분획제제	국가출하승인의약품의 출하승인수수료에 따름
3) 항생물질제제(화학적, 생물학적)의 역가시험(1시험당)	25,000
4) 발열성물질시험	30,100
5) 안전성시험	20,800

구 분	수수료(원)
6) 무균시험	
(1) 직접법	52,000
(2) 멤브레인필터법	140,000
7) 생균수시험	25,000
8) 유산균제제의 정량시험(1성분당)	27,000
9) 생약제제의 확인시험(1성분당)	
(1)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10,200
(2) 기기분석	46,400
10) 생약제제의 정량시험(1성분당)	67,800
11) 아미노산제의 확인시험(1성분당)	5,000
12) 단일아미노산제제의 정량시험	28,000
13) 복합아미노산제제(중산성 및 염기성 아미노산)의 정량시험	109,300
14) 비타민제시험	
(1) 확인시험(1성분당)	5,000
(2) 정량시험(1성분당)	28,000
(3) 생물학적 정량시험	25,000
15) 붕해시험	4,500
16) 향정신성의약품·마약 및 대마시험	
(1) 정성시험(1성분당)	7,000
(2) 정량시험(1성분당)	28,000
(3) 미지성분 시험(1성분당)	45,000
17) 수분시험(칼피셋법)	20,000
18) 주사제유리용기	
(1) 무색	3,500
(2) 착색	9,000

구 분	수수료(원)
19) 수액용고무마개시험	159,500
20) 플라스틱제의약품용기시험법	
(1) PE 또는 PP시험	82,000
(2) PVC시험	120,000
21) 인슐린함량시험(생물학적 방법)	533,000
22) 효소제시험(1항목당)	59,800
23) 호르몬제제시험(1성분당)	
(1) 정성시험	5,000
(2) 정량시험	28,000
24) 기타의약품시험(1성분당)	
(1) 기지성분 정성시험	5,000
(2) 미지성분 정성시험	28,000
(3) 정량시험	28,000
25) 함량균일성시험	30,000
26) 용출시험(1성분당)	30,000
27) 순도시험(1항목당)	
(1) 박층크로마토그래프법	10,000
(2) 기기분석	46,000
28) 극한점도시험, 강열잔분시험, 증발잔류물시험, 형상시험, 효능시험(1시험당)	5,100
29) 불용성이물시험	1,300
30) 비중시험, 입도시험, 실용량시험, 입자도시험 (1시험당)	2,500
31) 용점시험, 제산력시험, 흡착력시험(1시험당)	10,200
32) 비선광도시험, 불용성미립자시험(1시험당)	11,000
33) 미생물한도시험	232,000
34) 항원성시험	178,700

구 분	수수료(원)
35) 급성독성시험	53,100
36) 증류시험, 소포력시험, 굴절률시험, 강열감량시험 (1시험당)	3,500
37) 흡광도시험	14,000
38) 유연물질시험	28,000
39) 히스타민시험	41,200
40) 이식시험	40,500
41) 알코올수시험	8,200
42) 회분시험	7,700
43) 건조감량시험	2,800
44) 피내반응시험	78,500
45) 용혈성시험	21,500
46) 산불용성회분시험	11,900
47) 엑스함량시험	5,800
48) 보존제시험(1성분당)	32,000
49) 엔도톡신시험	89,700
50) 세포독성시험	30,000
51) 태반성 성선자극호르몬(HCG) 함량시험	402,500
52) 난포자극호르몬(FGH) 함량시험	517,000
53) 엘카토닌 함량시험	214,500
54) 중금속	
① 비색법	15,300
② 기기분석	46,900
55) 잔류농약(유기염소제)	330,600
56) 정유함량	17,500
57) 표백제시험	33,200

구 분	수수료(원)
58) 검경법에 의한 정상시험	13,400
59) 벤조피렌	122,000
60) 그 밖의 시험(1항목당)	
(1) 기기분석	30,000
(2) 상기외의 시험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61) 공 통	
(1) 질량(용량)편차시험, 내용량시험, 내용압력시험, 안정성시험(1시험당)	5,000
(2) 피·에이치(pH)시험	8,800

#### 4. 화장품의 시험·검사

구 분	수수료(원)
1) 정성시험(1성분당)	5,000
2) 정량시험(1성분당)	26,500
3) 순도시험(1항목당)	21,500
4) 납	11,700
5) 녹농균	18,600
6) 디옥산	21,800
7) 안티몬	16,900
8) 메탄올	26,400
9) 카드뮴	21,700
10) 포름알데하이드	28,800
11) 프탈레이트	51,300
12) 그 밖의 시험(1항목당)	
(1) 기기분석	30,000
(2) 상기외의 시험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13) 공 통	
(1) 질량(용량)편차시험, 내용량시험, 내용압력시험, 안정성시험(1시험당)	5,000
(2) 피·에이치(pH)시험	8,800

### 5. 의료기기의 시험·검사

구 분	수수료(원)
1) 방사선조사시험	
(1) 베타선조사시험(1회/4개 이하)	60,300
(2) 감마선조사시험(1회/4개 이하)	36,000
(3) 엑스선조사시험(1회/4개 이하)	52,200
(4) 방사능오염시험	119,500
2) 생물학적시험	
(1) 세포독성시험	30,000
(2) 무균시험	
① 직접법	52,000
② 멤브레인필터법	140,000
(3) 급성독성시험	53,100
(4) 이식시험	40,500
(5) 용혈성시험	21,500
(6) 발열성시험	30,100
(7) 피내반응시험	78,500
(8) 자극성시험(안자극시험)	32,300
3)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1) 누설전류시험	26,400
(2) 내전압시험	29,000
(3) 접지저항시험	25,500

구 분	수수료(원)
(4) 과열시험	40,500
(5) 전원입력시험	24,000
(6) 전압 및 에너지 제한시험	25,500
(7) 내충격시험	30,100
4) 방사선안전에 관한 시험	
(1) 누설엑스선의 제한시험	38,900
(2) 반가층시험	35,400
(3) 피검자와 수상면간 기구 및 재료의 알루미늄 당량시험	36,300
(4) 1차선방어벽의 이용선제한시험	36,300
(5) 투시촬영장치 주변으로부터의 산란선방어시험	36,300
(6) 입사조사선량율의 제한시험	36,300
(7) 엑스선조사야조절기구시험	36,300
(8) 엑스선조사선량의 허용차시험	33,900
(9) 조사선량의 재현성시험	33,900
(10) 엑스선기계장치의 성능시험	36,300
(11) 균일성시험	30,400
(12) 인장강도시험, 신장도시험, 영구신장시험, 인열강도시험(1시험당)	14,500
(13) 납당량시험	47,800
(14) 의료용필름판독기의 밝기 시험	3,000
(15) 누광시험	10,600
(16) 밀착시험, 그리드밀도시험, 그리드비시험(1시험당)	7,100
(17) 집속거리시험, 사용거리한계시험, 1차 엑스선투과율의 측정시험, 산란엑스선투과율의 측정시험(1시험당)	5,400
(18) 엑스선 불투과성시험	6,900
5) 공통	

구 분	수수료(원)
(1) 이화학적 시험 및 생물학적 시험 등의 수수료는 이 표의 3. 의약품 및 4. 화장품의 수수료에 준한다. (2) 기타 시험(1항목당)	4,000

## 6. 의약외품의 시험·검사

구 분	수수료(원)
1) 생리처리용 위생대	51,000
2) 마스크	
(1) 수술용	35,000
(2) 보건용	35,000
3) 월경처리용 탐폰	50,000
4) 안대	78,000
5) 치약상태시험, 분말도시험(1시험당)	5,200
6) 가아제	45,000
7) 붕대	40,000
8) 탈지면	50,000
9) 반창고	43,200
※ 6)에서 9)까지의 경우 멸균된 것은 무균시험 수수료(직접법인 경우에는 52,000원, 멤브레인 필터법의 경우에는 140,000원)를 각각 추가함	
10) 삼각끈	15,000
11) 스테키넷	41,400
12) 석고붕대, 압박대(1용품당)	35,000
13) 탄력붕대	31,400
14) 복부용 패드	135,000
15) 팩거즈	45,000
※ 엑스선 불투과성시험의 경우에는 6,900원을 추가함	
16) 소독포, 수술포(1용품당)	7,800

구 분	수수료(원)
17) 형상시험	5,000
18) 인장강도시험, 점착력시험, 신장율시험(1시험당)	16,400
19) 공통 (1) 이화학적 시험 및 생물학적 시험 등의 수수료는 이표의 3. 의약품 및 4. 화장품의 수수료에 준한다. (2) 기타 시험(1항목당)	4,000

7. 식품(가공식품, 농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포함)의 시험·검사

구 분	수수료(원)
1) 일반시험법	
(1) 이물	10,000
(2) 기생충 및 그 알	37,800
(3) 내용량	8,600
(4) 진공도	3,900
(5) 봉해시험	7,700
(6) 곰팡이수	16,100
(7) 피·에이치(pH)	8,600
2) 성분시험법	
(1) 수분	
① 건조감량법	7,100
② 칼피셔법	16,500
(2) 회분(조회분)	8,600
(3) 질소화합물	
① 총질소 및 조단백질	26,000
② 아미노산질소	39,800
③ 히드록시프롤린	123,600
(4) 탄수화물	

구 분	수수료(원)
① 환원당	37,000
② 자당	36,300
③ 당도(당도측정법)	9,300
④ 조섬유	26,000
⑤ 식이섬유	58,500
⑥ 당분(기기분석법에 의한 당류의 정량)	37,000
(5) 지질	
① 조지방	26,000
② 비중	2,500
③ 굴절률	5,900
④ 산가, 비누화가, 요오드가, 비비누화물, 과산화물 가(1항목당)	17,400
⑤ 지방산(EPA, DHA, 리놀렌산, 에르수산, 트랜스지방산 등)(1항목당)	56,5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 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⑥ 콜레스테롤	53,000
(6) 무기질	
① 칼슘, 인, 철, 식염, 요오드, 불소, 염소(1항목당)	46,0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 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수수 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② 나트륨, 칼륨, 아연, 셀레늄, 크롬, 몰리브덴(1항목당)	46,0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 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수수 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7) 비타민류	
① 비타민 A	117,200

구 분	수수료(원)
② 비타민 B1	67,300
③ 비타민 B2	92,900
④ 비타민 C	60,000
⑤ 나이아신	80,100
⑥ 기타 영양성분(비타민E, 비타민D, 비타민K1, 비타민B6(피리독신), 엽산, 판토텐산, 비타민B12 등)(1항목당)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55,000
3) 첨가물시험법	
(1) 보존료	
① 데히드로초산, 소브산, 안식향산 및 그 염류, 파라옥시안식향산에스테르류 시험법(동시분석법)	43,000
② 프로피온산 및 그 염류 시험법	43,000
(2) 인공감미료(아세실팜칼륨, 삭카린나트륨 및 아스파탐 등)(1항목당)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34,600
(3) 산화방지제	60,600
(4) 착색료(타르색소)	
① 정성시험	40,700
② 정량시험	70,100
(5) 이산화황, 아황산, 차아황산 및 그 염류 시험법(동시분석법)	11,900
(6) 발색제(아질산이온)	26,500
4) 원유 시험법	
(1) 유지방	120
(2) 세균수	720

구 분	수수료(원)
(3) 체세포수 검사법	120
5) 식품별 규격 확인 시험법	
(1) 식용얼음	
① 염소이온	8,600
② 질산성질소	15,000
③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700
(2) 당류	
① 올리고당(프락토올리고당, 이소말토올리고당, 갈락토올리고당, 말토올리고당, 자일로올리고당, 겐티오올리고당)(1항목당)	77,400
② 포도당당량	13,800
③ 텍스트린분	14,200
④ 과당	50,100
⑤ 총당	37,000
⑥ 비선풋도	5,500
⑦ 유당	37,000
(3) 식용유지류	
① 냉각시험	20,300
(4) 음료류	
① 가스압	3,000
② 인삼·홍삼성분	35,000
(5) 특수용도식품	
① 열량	92,000
② α-리놀렌산	53,000
③ 알파(α)화도	14,300
(6) 조미식품	

구 분	수수료(원)
① 총산	11,000
② 위화물	26,000
③ 총염소	14,600
④ 불용분	9,900
⑤ 황산이온	14,000
⑥ 사분	8,600
⑦ 페로시아화이온	22,900
⑧ 산불용성회분	12,400
⑨ 염화나트륨	11,100
(7) 주류	
① 알데히드, 메탄올, 퓨젤유(1항목당)	23,4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② 에탄올	26,000
③ 증발잔류물	15,700
(8) 농산가공식품류	
① α-아밀라아제	42,000
② 프로테아제	42,000
(9) 식육 및 알가공품	
① 휘발성염기질소	14,300
(10) 유가공품	
① 비중	2,500
② 산도	10,200
③ 유지방(Gerber법)	26,000
④ 포스파타제	12,000

구 분	수수료(원)
⑤ 지방의 낙산가	21,400
⑥ 카제인포스포펩타이드	9,000
(11) 수산물가공식품	
① 열탕불용해잔사물	9,500
② 붕산	35,600
③ 일산화탄소	53,400
(12) 벌꿀 및 화분가공품	
① 물불용물	11,700
② 전화당	60,600
③ 자당	36,300
④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	36,900
⑤ 이성화당	29,800
⑥ 탄소동위원소비율	52,100
⑦ 10-히드록시-2-데센산(10-HDA)	75,000
6) 잔류농약분석법	
(1) 식품(인삼 포함)	
① 다중농약다성분 분석법	577,800
② 다성분 분석법(1시험법당)	81,4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시험법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7,500원을 추가함	
③ 단성분 분석법(1항목당)	81,400
※ 다만, ① 다중농약다성분 분석법에 해당 농약항목 중 일부만 의뢰할 경우 ② 다성분 분석법 및 ③ 단성분 분석법으로 간주하여 산출한 시험수수료가 ① 다중농약다성분 분석법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적용한다.	
(2) 축산물	
① 다성분 분석법	278,400

구 분	수수료(원)
② 단성분 분석법(1항목당) ※ 다만, ① 다성분 분석법에 해당하는 항목 중 일부만 의뢰할 경우 ② 단성분 분석법의 시험수수료(1항목당)에 1항목 추가시 마다 7,500원을 추가하여 산출한 시험수수료가 ① 다성분 분석법의 수수료보다 적을 경우 그 수수료를 적용한다.	81,400
7) 잔류동물용의약품시험법	
(1) 정성시험(성장보조제 제외)(1항목당)	20,0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2) 정량시험(성장보조제 제외)(1항목당)	40,0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3) 성장보조제(1항목당)	180,3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8) 유해물질	
(1) 중금속	
① 주석, 납, 카드뮴, 비소(1항목당)	76,700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② 수은	35,200
③ 메틸수은	70,000
④ 중금속(비색법)	14,700
(2) 곰팡이독소	
① 총 아플라톡신(B1, B2, G1 및 G2)	87,000
② 아플라톡신 M1	87,000

구 분	수수료(원)
③ 파툴린, 제랄레논, 데옥시발데논, 푸모니신(1항목당)	87,000
④ 오크라톡신 A	128,000
(3) 다이옥신(정량검사)	2,600,000
(4) 벤조피렌	122,000
(5) 3-MCPD	80,900
(6) 방사능	80,000
(7)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74,000
10) 식품표시 관련 시험법	
(1) 유전변형식품의 시험법	
① 유전자변형 콩 정성검사(1품목기준)	120,000
※ 1품목 추가시마다 16,700	
② 유전자변형 옥수수 정성검사(5품목기준)	185,000
※ 1품목 추가시마다 16,700	
③ 유전자변형 콩 및 옥수수 정성검사(6품목기준)	216,800
※ 1품목 추가시마다 16,700	
(2) 한우 확인 시험법	80,000
11) 백수오, 이엽우피소 원료판별	135,500
12) 기타(1항목당)	
(1) 기기분석	30,000
(2) 상기외의 시험	유사 시험항목에 준 합

#### 8. 건강기능식품의 시험·검사

구 분	수수료(원)
1) 일반시험법	
(1) 내용량	2,300
(2) 입도	8,600
(3) 산도	8,800

구 분	수수료(원)
(4) 유해물질시험법	
① 시안화합물	36,000
② 카페인	56,300
③ 디에틸렌글리콜	24,900
2) 개별성분시험법	
(1) 베타카로틴	70,300
(2) 글루코사민	42,000
(3) 콘드로이친황산·단백질, 뮤코다당·단백질(1항목당)	68,000
(4) 콘드로이친황산	42,000
(5) 키토올리고당	42,000
(6) 지방산(EPA, DHA, 리놀렌산, 에루스산 등)(1항목당)	56,500
※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 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 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 가함	
(7) 인지질	36,000
(8) 인지질 중 포스파티딜콜린의 함량	42,000
(9) 스쿠알렌	53,000
(10) 알콕시글리세롤	36,000
(11) 옥타코사놀	53,000
(12) 10-히드록시-2-데센산(10-HDA)	75,000
(13) 루테인	71,500
(14) 카테킨	73,900
(15) 안트라퀴논계화합물	42,000
(16) 총 플라보노이드	42,000
(17) 파라(p)-쿠마르산 및 계피산	34,700

구 분	수수료(원)
(18) 진세노사이드	76,600
(19) 총 엽록소	42,000
(20) 총 페오포르바이드	46,600
(21) 유산간·구균	22,700
(22) 비피더스균	56,300
(23) 자실체 또는 균사체의 함량 및 확인	75,000
(24) 효모수	23,300
(25) α-아밀라아제	42,000
(26) 프로테아제	42,000
(27) 플라보놀 배당체	110,700
(28) 강콜릭산	217,000
(29) 엠에스엠	82,300
(30) 히알루론산	52,300
(31) 기타(1항목당)	
① 기기분석	30,000
② 상기외의 시험	유사 시험항목에 준 합

### 9. 식품첨가물의 시험·검사

구 분	수수료(원)
1)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또는 그 변경에 대한 검토	30,000
2) 확인시험(1항목당)	
(1) 정성반응	6,000
(2) 기기분석	33,000
3) 순도시험(1항목당)	
(1) 정성반응	6,000
(2) 기기분석	33,000
4) 건조감량시험	6,100
5) 강열잔류물시험	12,100
6) 수분시험(칼피셔법)	12,800
7) 정량법(색가)	10,300
8) 활성시험법(역가)	32,000
9) 매운맛	10,700
10) 물가용물 및 액성	10,600
11) 잔류용매	39,200
12) 2-아세틸-4-테트라히드록시부틸이미다졸	75,100
13) 환원당	12,000
14) 기구등 살균소독제시험	
(1) 중화제 선정시험	522,700
(2) 살균소독력시험	432,800
15) 기타 시험(1항목당)	
(1) 적정법	6,000
(2) 기기분석	32,000
(3) 상기외의 시험	유사 시험항목에 준 합

### 10. 기구 및 용기포장의 시험·검사

구 분	수수료(원)
1)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또는 변경에 대한 검토	30,000
2) 페놀시험	37,300
3) 색소시험	9,200
4) 형광증백제시험	12,100
5) 염화비닐	61,500
6) 납 및 카드뮴	45,000
7) 디부틸주석화합물	97,100
8) 크레졸인산에스테르	81,200
9) 휘발성물질	38,900
10) 염화비닐리덴	23,900
11) 바륨	39,300
12) 비스페놀 A(페놀 및 p-터셔리부틸페놀 포함)	59,500
13) 디페닐카보네이트	63,400
14) 아민류	33,500
15) 총용출량(증발잔류물)	9,100
16)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10,700
17) 안티몬	29,800
18) 게르마늄	34,000
19) 포름알데히드	52,300
20) 메틸메타크릴레이트	28,300
21) 카프로락탐 및 라우로락탐	34,700
22) 멜라민	45,100
23) 이소시아네이트	31,500
24) 아크릴로니트릴	64,500
25) 2-머캅토이미다졸	53,900

구 분	수수료(원)
26) PCBs	114,800
27) 비소, 아연(1항목당)	36,000
28) 에피클로로히드린	65,000
29) 열 충격 강도	5,700
30) 1,3-부타디엔	48,300
31) 1,4-부탄디올	55,000
32) 1-옥텐 및 1-헥센	36,800
33) 4,4'-디클로로디페닐설펜	51,800
34) 4,4'-디히드록시디페닐설펜	64,400
35) 일차방향족아민(아닌린, 4,4'-메틸렌디아닐린, 2,4-톨루엔디아민)(동시분석법)	33,700
36) 수은	15,100
37) 6가크롬	33,200
38) 니켈	25,700
39) 니트로사민류 및 니트로사민류 생성 가능물질	124,900
40) 디부틸프탈레이트, 벤질부틸프탈레이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 디-n-옥틸프탈레이트, 디이소노닐프탈레이트, 디이소데실프탈레이트 및 디에틸헥실아디페이트 (1항목당)	85,600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41) 비닐아세테이트	24,800
42) 비스페놀 A 디글리시딜에테르 및 비스페놀 F 디글리시딜에테르	84,700
43) 아세트알데히드	24,800
44) 에틸렌디아민 및 헥사메틸렌디아민	97,600

구 분	수수료(원)
45) 오쏘페닐페놀, 티아벤다졸, 비페닐, 이마자릴(1항목당)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시험·검사법에 따라 동시분석으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각각 1항목의 시험·검사 수수료에 1항목 추가시 마다 5,000원을 추가함	72,300
46) 이산화황	13,300
47) 테레프탈산 및 이소프탈산	55,900
48) 기타 시험(1항목당)	
(1) 기기분석	30,000
(2) 상기외의 시험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 11. 위생용품의 시험·검사

구 분	수수료(원)
1) 중금속 시험	36,000
2) 형광증백제시험	13,300
3) 피·에이치(pH)시험	8,600
4) 메틸알콜	43,000
5) 비소, 아연(1항목당)	36,000
6) 과망간산칼륨소비량	10,700
7) 수분	8,000
8) 납 및 카드뮴	45,000
9) 총용출량(증발잔류물)	9,100
10) 페놀	27,000
11) 포름알데히드	52,300
12) 허용외 타르색소	14,400
13) 면체와 축의 거리	1,000
14) 축간 거리	1,000

구 분	수수료(원)
15) 면체와 축의 접촉강도	5,100
16) 축의 강도	5,100
17) 염소화페놀류 오염화석탄(PCP)	45,100
18) 염소화페놀류 사염화석탄산(TeCP)	43,600
19) 아조염료	126,400
20)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77,300
21) 유해원소 용출	87,500
22) 유해원소 함유량	35,000
23) 기타 시험(1항목당)	
(1) 기기분석	30,000
(2) 상기외의 시험	유사 시험항목에 준함

※ 비 고

1. 성상항목은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서 수수료를 정하지 아니한 항목을 시험·검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과 가장 유사한 시험·검사의 항목에 대한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으며, 동시분석에 의한 검사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적용한다.
3.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새로 개발되거나 처음 수입된 의약품 등에 대한 시험·검사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삭제 <2020.11.2.>
5. 검체채취의 원칙에 따라 동일한 검체에 대하여 2개 이상의 검체를 채취하여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1개의 검체 시험·검사 수수료를 적용한다.



### 잔여검체 수령 안내

잔여검체는 시험·검사가 끝난 날(수입검사의 경우 수입신고확인증 발급일)부터 7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내에 신청인이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하여 잔여검체 반환 신청서(사본)을 제시하고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7일 이후에는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 규정 제8조에 따라 폐기됩니다). 냉장·냉동 검체 등의 경우에는 유통기준에 적합한 포장 등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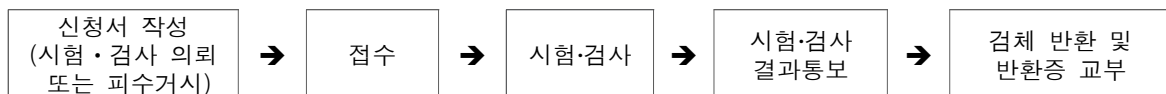
### 잔여검체 사용 및 관리 책임 확인

본인은 「시험·검사 등 잔여검체 처리규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검체 반환을 신청하면서, 반환된 잔여검체를 신청한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소유권자 책임 하에 「식품위생법」 제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처리 절차 Processing procedure



신청인

처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10mm×297mm [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 [붙임 4] 시험·검사성적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 의뢰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16.>

제 호(Issue number)	<h2 style="margin: 0;">시험 · 검사성적서</h2> <h3 style="margin: 0;">Laboratory Testing Certificate</h3>	
수신자(Recipient):		
① 시험·검사 대상물명 Product name		
② 의뢰인 Client		
③ 시험·검사 항목 Test items		
④ 의뢰 목적 Purpose of testing		
⑤ 제조원 Manufacturer		
⑥ 제조번호(제조일자) Manufacture serial number(date of manufacture)		
⑦ 수입허가번호(허가일자) Import permit number (date of issuance)		
시험·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Test results are as follows): 성적(Result):		
년(Year)      월(Month)      일(Day)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orange; width: 40px; height: 4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span style="color: orange; font-weight: bold;">직인</span> </div>
유의사항		
※ 이 성적은 제시된 시험·검사 대상물에만 해당하며, 시험·검사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적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정필” 이라는 문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적어서는 안 됩니다. ※ The laboratory testing certificate covers only the product which name appears on the certificate. It is prohibited to change details of the certificate or use terms such as "government guarantee", "approved" or any phrases similar in meaning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